
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창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7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7. 28.

발의자 : 강창일 · 소병훈 · 서영교
정동영 · 송옥주 · 김철민
황주홍 · 이개호 · 윤영일
전혜숙 · 위성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(賦存)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(이하 “지하수기초조사”)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작(1992년)한 지하수기초조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완료율이 71%(48개 지역 미완료, 2016년 기준)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,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·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).

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

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하여야”를 “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한”을 “대하여 10년마다”로, “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”를 “실시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